제 42 대 의회 제 5 회기 (2024)

제 1 독

이하의 전자 버전은 참고용입니다.

인쇄된 버전이 공식적인 버전입니다.

OCCA 참고: 이 문서는 AI 번역의 일부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용도로는 정부에서 발행한 영문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

2024 년 제 23 호 법안

반인종차별법

목차

제 1 부 — 해석 및 원칙

1 해석

2 원칙

제 2 부 —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3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4 행동 계획 요구 사항

제 3 부 — 주립 반인종차별 위원회

5 주립 반인종차별 위원회

6 행동 강령 및 이해상충 요구 사항

7 위원회의 역할

8 고문 및 전문가

제 4 부 — 원주민 대상 시스템적 인종차별

9 정부의 책임

10 공공기관은 원주민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함

11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

12 원주민 특정 반인종차별 평가

13 원주민 특정 반인종차별 교육

14 원주민 특정 채용, 유지 및 승진

제 5 부 — 시스템적 인종차별

15 위원회의 책임

16 공공기관은 인종화된 커뮤니티와 소통해야 함

17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

18 반인종차별 평가

19 반인종차별 교육

20 채용, 유지 및 승진

제 6 부 — 준수

21 준수 검토

22 준수 명령

제 7 부 — 책임

23 공공기관 연례 보고서

24 대중의 반응

25 장관 연례 보고서

26 법안 및 규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

27 검토 요구 사항

제 8 부 — 보조금

28 보조금 신청

29 장관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

제 9 부 — 일반 규정

30 위반법 제 5 조는 적용되지 않음

31 규정

32-33 관련 개정

34 시행

국왕 폐하께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의회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제 1 부 — 해석 및 원칙

1 (1) 이 법에서:

"행동 계획"이란 제 3 조 (3) (a)를 제외하고, 제 3 조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에 따라 작성된 주립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란 제 5 조에 따라 설립된 주립 반인종차별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커뮤니티 피해"란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1 조 [해석]에서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주민"이란 원주민 권리 선언법 제 1 조 (1) [해석]에서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공기관"이란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1 조에서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게시"란 문서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문서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원주민의 다양성, 특히 고유한 언어, 문화, 관습, 전통, 권리, 법적 전통, 제도, 거버넌스 구조, 영토와의 관계 및 지식 체계.

(b) 식민지 관행, 정책 및 법률에 뿌리를 둔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

2 원칙

이 법의 운영 및 해석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적 불평등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개인과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b)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및 법률에서의 인종 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c)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개인의 교차적 정체성이 어떻게 고유한 경험을 초래하거나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적 불평등에 직면할 위험을 높이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d) 원주민과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퍼스트 네이션, 메티 및 이누이트 각각의 고유한 권리, 이익, 우선순위 및 우려 사항을 인식하는 것)은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 인종 평등 증진 및 이 법의 시행에 필수적입니다.

(e)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인종화된 커뮤니티와의 소통은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 인종 평등 증진 및 이 법의 시행에 필수적입니다.

(f) 시스템적 인종차별,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적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커뮤니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 2 부 —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3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1) 정부는 2026 년 6 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주립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행동 계획의 수립 및 개정은 다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a) 원주민과의 협의 및 협력, 그리고

(b) 인종화된 커뮤니티와의 소통.

(3)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할 때 정부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원주민 권리 선언법 제 4 조 [행동 계획]에 따라 작성된 행동 계획, 그리고

(b)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17 조 [연구 우선순위]에 따라 확립된 연구 우선순위.

4 행동 계획 요구 사항

(1) 행동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b) 시스템적 인종차별,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 이슬람 공포증 및 반유대주의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c)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

인종 평등 증진, 그리고 (b)호에 규정된 피해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기관의 목표, 그리고

(d) (c)호에 따른 각 목표 달성을 향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특정 공공기관에 관한 행동 계획에 포함시키기 전에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정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최소 2년마다 행동 계획을 검토하고,

(b) 각 검토 후 필요에 따라 행동 계획을 개정해야 합니다.

(4) 행동 계획이 수립되거나 개정된 후 장관은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행동 계획을 게시하고,

(b) 행동 계획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 3 부 — 주립 반인종차별 위원회

5 주립 반인종차별 위원회

(1) 장관은 주립 반인종차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2) 장관은 위원회 위원으로 최소 7명, 최대 1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3) 모든 위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개인이어야 합니다:

(a) 인종화된 개인일 것, 그리고

(b)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제거 및 인종 평등 증진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

(4) 위원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인종화된 개인 또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최소 2명의 개인;

(b) 시스템 사고의 이론 및 실무에 전문 지식을 갖춘 최소 2명의 개인;

(c)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및 실시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최소 2명의 개인.

(5) 장관은 위원 중 한 명을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은 다음과 같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a) 최대 3년의 임기로 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것, 그리고

(b) 최대 3년의 임기로 1회 이상 연임될 것.

(7) 개인이 연속하여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연속하여 6년 동안 위원으로 재임한 개인은 위원으로 다시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9)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 회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

(b) 소위원회 설치, 소위원회 위원 임명, 소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

(10) 재무위원회 일반 지침에 따라 장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위원이 직무 수행 중 필연적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여비 및 제비용을 환급하거나 지급하는 것,

(b) 위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

6 행동 강령 및 이해상충 요구 사항

(1) 장관은 위원회 위원을 위한 행동 강령 및 이해상충 요구 사항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수립한 행동 강령 및 이해상충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위원회의 역할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부에 조언해야 합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

(b) 행동 계획의 수립 및 개정,

(c) 이 법 및 규정의 시행.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에 조언해야 합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

(b) 행동 계획의 시행.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언에 관한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게시된 보고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8 고문 및 전문가

(1) 장관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문 또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법은 제(1)항에 따라 고용되거나 유지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부 — 원주민 대상 시스템적 인종차별

9 정부의 책임

(1) 원주민과 협의하고 협력한 후, 정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공공기관이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관한 반인종차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반인종차별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

(b)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관한 공공기관용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 및 반인종차별 교육의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c) (b)호에 따른 각 목표 달성을 향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

(2) 정부는 제(1)항에 규정된 프레임워크 개발 및 기준, 목표, 지표 설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10 공공기관은 원주민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함

공공기관은 이 부의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원주민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11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

(1) 공공기관은 자사의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원주민을 위한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과 관련된 해당 공공기관을 위한 행동 계획에 포함된 모든 조치;

(b) 제 9 조(1)(b)에 따라 설정된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 및 반인종차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

(c) 제 14 조(1)(a)에 따라 확립된 채용, 유지 및 승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

(3)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공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원주민을 위한 인종 평등 증진과 관련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2 부에 규정된 정보;

(b)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원주민을 위한 인종 평등 증진에 관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17 조 [연구 우선순위]에 규정된 연구;

(c)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을 위한 인종 평등에 관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19 조 [통계 또는 기타 정보의 게시]에 따라 게시된 통계 또는 기타 정보;

(d) 제 12 조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한 반인종차별 평가 결과;

(e) 원주민이 제공한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

(4) 제(3)항(e)에 규정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커뮤니티 피해의 식별, 예방, 완화 및 최소화를 고려하는 것;

(b) 규정으로 정한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12 원주민 특정 반인종차별 평가

(1) 공공기관은 제 9 조(1)(a) [정부의 책임]에 따라 개발된 반인종차별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반인종차별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반인종차별 평가를 수행하는 목적은 제 11 조(1)에 따라 공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정, 중단 또는 교체

(b)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13 원주민 특정 반인종차별 교육

(1) 공공기관은 다음에 관한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해야 합니다:

(a) 원주민의 역사 및 문화

(b)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c) 원주민이 경험한 시스템적 인종차별, 세대 간 트라우마 및 식민주의에 뿌리를 둔 폭력

(d) 조약상의 권리 및 조약 체결 퍼스트 네이션과 정부 간의 관계

(e) 원주민의 문화적 안전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실천

(2) 공공기관은 커리큘럼에 따라 자사의 직원, 자원봉사자 및 고용된 계약업체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커리큘럼 및 교육은 제 9 조(1)(b) [정부의 책임]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원주민 특정 채용, 유지 및 승진

(1) 공공기관은 다음을 확립해야 합니다:

(a) 다음에 관한 목표:

(i) 공공기관 내 원주민 개인의 채용, 유지 및 승진

(ii) 공공기관의 고위 관리직 내 원주민 개인의 채용, 유지 및 승진

(b) 각 목표 달성을 향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2) 공공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최소 2 년마다 목표 및 지표를 검토하고,

(b) 각 검토 후 필요에 따라 목표 및 지표를 개정해야 합니다.

제 5 부 — 시스템적 인종차별

15 위원회의 책임

(1)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공공기관이 반인종차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반인종차별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

(b) 공공기관을 위한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 및 반인종차별 교육의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c) (b)호에 따른 각 목표 달성을 향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

(2)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기준,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a) 인종화된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b) 공공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통해.

16 공공기관은 인종화된 커뮤니티와 소통해야 함

공공기관은 이 부의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인종화된 커뮤니티와 소통해야 합니다.

17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

(1) 공공기관은 자사의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해당 공공기관을 위한 행동 계획에 포함된 모든 조치,

(b) 제 15 조(1)(b)에 따라 설정된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 및 반인종차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

(c) 제 20 조(1)(a)에 따라 확립된 채용, 유지 및 승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

(3)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공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과 관련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2 부에 규정된 정보;

(b)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에 관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17 조 [연구 우선순위]에 규정된 연구;

(c)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 평등에 관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제 19 조 [통계 또는 기타 정보의 게시]에 따라 게시된 통계 또는 기타 정보;

(d)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 평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제공한 조언 또는 기타 정보;

(e) 제 18 조(1)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한 반인종차별 평가 결과;

(f) 인종화된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적 불평등에 관한 정보.

(4) 제(3)항(f)에 규정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커뮤니티 피해의 식별, 예방, 완화 및 최소화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b) 규정으로 정한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18 반인종차별 평가

(1) 공공기관은 제 15 조(1)(a) [위원회의 책임]에 따라 개발된 반인종차별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반인종차별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반인종차별 평가를 수행하는 목적은 제 17 조(1)에 따라 공공기관이 취하는 조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정, 중단 또는 교체,

(b)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19 반인종차별 교육

(1) 공공기관은 다음에 관한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해야 합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적 불평등,

(b) 인종화된 개인 및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적 안전과 존중을 지원하는 실천.

(2) 공공기관은 커리큘럼에 따라 자사의 직원, 자원봉사자 및 고용된 계약업체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커리큘럼 및 교육은 제 15 조(1)(b) [위원회의 책임]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 채용, 유지 및 승진

(1) 공공기관은 다음을 확립해야 합니다

(a) 다음에 관한 목표

(i) 공공기관 내 인종화된 개인의 채용, 유지 및 승진,

(ii) 공공기관의 고위 관리직 내 인종화된 개인의 채용, 유지 및 승진,

(b) 각 목표 달성을 향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2) 공공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최소 2년마다 목표 및 지표를 검토하고,

(b) 각 검토 후 필요에 따라 목표 및 지표를 개정해야 합니다.

제 6 부 — 준수

21 준수 검토

(1) 장관은 수시로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검토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a) 공공기관의 이 법 및 규정 준수 여부;

(b)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된 행동 계획 시행의 진척 상황(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행동 계획에서 설정된 목표 달성을 향한 공공기관의 진척 상황, 그리고

(ii)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c)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취한 기타 조치.

(2) 장관은 검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은 장관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4) 검토 완료 후, 지명된 사람은 장관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검토 결과, 그리고

(b)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해당 인물이 제시하는 권고 사항(있는

경우).

(5)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입법 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보고서를 입법 의회에 제출합니다;

(b) 입법 의회가 휴회 중인 경우, 보고서를 입법 의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합니다.

(6) 제(5)항을 이행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보고서를 게시하고,

(b) 보고서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2 준수 명령

(1) 장관은 공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수 명령을 발행하여 공공기관이 장관이 지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이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

(b)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된 행동 계획에 포함된 조치의 시행에 있어 만족스러운 진척을 이루는 것.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준수 명령을 발행하기 전에 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에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 명령 제안 통지, 그리고

(b) 의견을 진술할 기회.

(3) 준수 명령을 발행할 때 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취한 조치;

(b) 행동 계획에서 해당 공공기관을 위해 설정된 목표 달성을 향한 진척 상황;

(c)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언;

(d) 제 21 조(1) 또는 제 26 조(1)에 따라 지명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권고 사항.

(4) 준수 명령을 발행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장관은 해당 명령을 게시해야 합니다.

제 7 부 — 책임

23 공공기관 연례 보고서

(1) 2026 년 4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정부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각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행동 계획에서 설정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된, 행동 계획에서 해당 공공기관을 위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b) 제 9 조(1)(c) 및 제 15 조(1)(c)에 따라 설정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된, 제 9 조(1)(b) [정부의 책임] 및 제 15 조(1)(b) [위원회의 책임]에 규정된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목표의 달성;

(c) 제 11 조(1)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 및 제 17 조(1)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조치의 시행;

(d) 제 14 조(1)(b) 및 제 20 조(1)(b)에 따라 공공기관이 확립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된, 제 14 조(1)(a) [원주민 특정 채용, 유지 및 승진] 및 제 20 조(1)(a) [채용, 유지 및 승진]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

(3) 공공기관은 해당 회계연도 다음 해 5 월 31 일 또는 그 이전에 연례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장관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공공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보고서를 게시하고,

(b) 보고서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4 대중의 반응

제 23 조(4)에 따라 보고서를 게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공공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보고서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b) 원주민, 인종화된 커뮤니티 및 공공기관 대표자 간의 존중 있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대화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25 장관 연례 보고서

(1) 2026 년 4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정부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장관은 다음 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 해당 연도에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며 인종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취한 조치, 그리고

(b) 다음 목표 달성을 향한 공공기관의 진척 상황:

(i) 행동 계획에서 설정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된, 행동 계획에서 설정된 목표;

(ii) 제 9 조(1)(c) 및 제 15 조(1)(c)에 따라 설정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된, 제 9 조(1)(b) 및 제 15 조(1)(b)에 규정된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목표; 그리고

(iii) 제 14 조(1)(b) 및 제 20 조(1)(b)에 따라 설정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된, 제 14 조(1)(a) 및 제 20 조(1)(a)에 규정된 채용, 유지 및 승진 목표.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장관은 해당 회계연도에 시스템적 인종차별,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적 불평등에 관하여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게시한 보고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장관은 매 회계연도 9 월 30 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직전 정부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하고,

(b) 보고서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6 법안 및 규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

(1) 2029 년 5 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최소 5 년마다 장관은 이 법 및 규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해야 합니다.

(2) 장관은 검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조건은 지명된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a) 이 법 및 규정의 효과성, 그리고

(b) 행동 계획과 이 법 및 규정의 시행에 있어 공공기관의 진척 상황(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공공기관이 취한 조치와 행동 계획 목표 간의 일치성, 그리고

(ii)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과 제거,

그리고 인종 평등 증진에 있어 공공기관 조치의 효과성.

27 검토 요구 사항

(1) 제 26 조(1)에 따라 지명된 사람은 장관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지명된 사람은 원주민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3) 지명된 사람은 검토 기간 동안 최소한 다음의 사람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a)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제거 및 인종 평등 증진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

(b)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제거 및 인종 평등 증진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

(c) 인종화된 개인 및 커뮤니티;

(d) 인종화된 개인 또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단체;

(e) 위원회;

(f) 인권법에 따라 임명된 인권 위원.

(4) 검토 완료 후, 지명된 사람은 장관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검토 결과, 그리고

(b) 다음 사항에 대해 해당 인물이 제시하는 권고 사항(있는 경우):

(i) 행동 계획의 시행을 개선하거나 이 법 및 규정의 시행 또는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그리고

(ii) 이 법 및 규정의 개정 사항.

(5)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입법 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보고서를 입법 의회에 제출합니다;

(b) 입법 의회가 휴회 중인 경우, 보고서를 입법 의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합니다.

(6) 제(5)항을 이행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보고서를 게시하고,

(b) 보고서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 8 부 — 보조금

28 보조금 신청

(1)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퍼스트 네이션, 메티 또는 이누이트 개인 또는 그룹을 지원하는 원주민 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

(b)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로 인해 발생한 원주민 개인의 피해 및 커뮤니티 피해에 대한 대응.

(2) 제(1)항에 규정된 단체를 제외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인종화된 개인 또는 인종화된 개인 그룹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 및 제거와 인종 평등 증진;

(b)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인종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및 커뮤니티 피해에 대한 대응.

(3) 이 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보조금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기술하고,

(b)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29 장관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

(1) 장관은 제 28 조(1) 또는 (2)에 따라 이루어진 보조금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관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입법 의회가 그 목적을 위해 할당한 자금 내에서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관은 이 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장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9 부 — 일반 규정

30 위반법 제 5 조는 적용되지 않음

위반법 제 5 조 [일반 위반]는 이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1 규정

(1) 부총독은 행정위원회에서 해석법 제 41 조 [규정 제정 권한]에 규정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을 제한하지 않고 부총독은 행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 이 법에 따라 게시되는 문서의 접근 가능한 형식에 관한 사항;

(b) 제 9 조(1)(a) [정부의 책임] 또는 제 15 조(1)(a) [위원회의 책임]에 따라 확립된 반인종차별 평가 및 반인종차별 평가 프레임워크에 관한 사항(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반인종차별 평가의 형식 및 내용, 그리고

(ii) 반인종차별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빈도;

(c) 반인종차별 교육 커리큘럼 및 반인종차별 교육, 그리고 정부(제 9 조(1)(b) 및 (c)) 또는 위원회(제 15 조(1)(b) 및 (c))가 설정한 기준, 목표 및 지표에 관한 사항;

(d) 제 11 조(4)(b)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의 목적을 위해 제 11 조(3)(e)에 규정된 정보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확립하는 사항;

(e) 제 17 조(4)(b) [시스템적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의 목적을 위해 제 17 조(3)(f)에 규정된 정보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확립하는 사항;

(f) 제 29 조 [장관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보조금의 목적, 금액 또는 수령인 제한, 그리고

(ii)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거나 지급해야 하는 조건.

(3)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사항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것;

(b) 특정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c) 공공기관, 사람, 사물, 상황 또는 기타 사항의 등급이나 범주를

확립하거나 정의하는 것;

(d) 서로 다른 공공기관, 사람, 사물, 상황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 또는 이들의 서로 다른 등급이나 범주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정하는 것.

관련 개정

다문화주의법

32 ***다문화주의법***(R.S.B.C. 1996, c. 321) 제 1 조, 제 4 조, 제 5 조 및 제 6 조는 폐지됩니다.

33 제 7 조(2)는 폐지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2) 장관은 각 회계연도에 대해 이 법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행

34 이 법의 다음 표 1 열에 규정된 조항은 표 2 열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项항목	1 열: 법 조항	2 열: 시행
1	이 표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	왕실 승인일
2	제 32 조 및 제 33 조	2024 년 6 월 30 일

설명 주석

이 법안은 다음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과 제거, 그리고 인종 평등 증진을 지원합니다:

- 주립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 원주민과의 협의 및 협력, 인종화된 커뮤니티와의 소통;

- 주립 반인종차별 위원회;

– 시스템적 인종차별 및 원주민 특정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식별과 제거, 인종 평등 증진에 관한 공공기관 요구 사항.